

2020년 지방의료원 중앙협약서

① 코로나19에 따른 노동권 및 안전권 보호

1.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권 보호) ① 감염예방, 격리,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휴가에 대해서는 유급휴가를 보장하며,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기관별 노사합의에 따른다.
② 코로나19 등 전염성감염병의 장기화에 대비한 적정 인력 운영 방안을 노사합의로 마련하여 시행한다.
2. (위험수당) 위험수당을 월 1만원 인상한다. 단 군산의료원은 2020년도 지방의료원 특성교섭 합의를 준용한다. 위험수당의 적용시기는 2021년 1월 1일로 한다.
3. (특별유급휴가) 신종감염병 등의 국가재난상황 발생시 특별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단, 세부사항은 기관별로 노사합의로 정한다.
4. (국가재난상황 대응 시 노조참여) 코로나19 등 국가재난상황 대응과 관련하여 별도의 대책기구가 있을 경우 노조의 참여를 보장하며, 직원 안전을 위해 노조가 요구하는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한다.

② 공공보건의로 강화를 위한 노사 공동사업 추진

1. 지방의료원 노사는 공공보건의료의 강화 및 공공보건의료 영역에서의 지방의료원 역할 확대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노사 공동의 활동과 사업을 추진한다.
 - ① 노사공동의 대정부 청원
 - ② 노사공동의 대국회 입법활동
 - ③ 공공의료 강화 및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노사공동 추진단(가) 구성·운영
 - ④ 노사공동포럼 및 토론회, 캠페인 등
2. 상기 1항에 따른 노사 공동의 대정부 청원의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반영하여 추진한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대정부 공동청원〉

1. 전담병원 지정 및 해제 등에 따른 손실 보상 및 지원

1-1/ 전담병원 지정 등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 운영 및 환자와 직원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로 발생한 직·간접 손실(격벽 및 동선구분, 기기장비 활용 등의 시설, 장비에 관한 손실 및 인력운영 등)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한다.

1-2/ 감염병에 대응하는 진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정상화 및 기능회복 기간까지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외래 및 입원환자 수, 병상가동률 등 주요지표가 작년 동월 대비 100% 도달시점까지 정부에서 인건비 직접 지원 요청

* 지방의료원 설립주체인 지방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지방의료원 지원여력이 없으므로 국비 중심의 예산사업으로 지원

1-3/ 의료기관 손실 보상 지원금이 인건비에 최우선으로 사용되도록 지침을 마련한다.

1-4/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위험 노동에 대해 위험수당을 제공한다.

2.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지원

2-1/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원칙에 지역거점공공병원을 의무 지정하도록 법제화한다.

2-2/ 진료권별 미충족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지자체별 관할 내에 최소 1개 이상의 공공의료를 신설하며, 이를 위한 채용 마련 및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

* 경상남도(진주의료원), 경기도(하남), 인천시(제2의 인천의료원), 부산시(침례병원 공공병원 전환), 대전(대전의료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제주(국제녹지병원 공공병원 전환), 울산시(공공병원 설립)는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함.

3.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 및 지원

3-1/ 공공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근무당 필요인력 기준에 대해 노사정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

3-2/ 책임의료기관 지정을 위한 인력확충 가이드라인 마련하여 시행한다.

3-3/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필요인력에 대한 정책 가산 등 인력확충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3-4/ 의료취약지 간호사 인건비 지원사업을 전체 지방의료원으로 확대·시행한다.

3-5/ 의사인력 인건비 지원제도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개선한다.

가. 파견의사 인건비 예산 확대

나. 국립대병원에 의사파견할당제 시행 및 평가지표 마련

다. 공중보건 장학제도 확대(간호사)

3-6/ 국립공중보건의료대학을 법제도 마련을 빠르게 정비하는 한편, 조속히 설립한다.

3-7/ 지방의료원의 현실에 맞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의 보완 및 지원을 확대한다.

4. 공공의료사업 수행을 위한 지원

4-1/ 국립대병원(권역책임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 및 광역단위에서의 리더십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국립대병원 설치법 개정을 통해 법률로 정한다.

- 4-2/ 지역책임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이 미충족 필수의료서비스(① 응급·외상 ② 심뇌혈관 ③ 모성·분만 ④ 감염 및 위기대응 ⑤ 노인돌봄(호스피스, 재활) ⑥ 정신, 자살예방, 치매 등 ⑦ 암)에 대한 역할 수행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 4-3/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육성대책이 2020년 공공의료발전종합계획(20~25) 수립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의료 종합계획 수립시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4-4/ 공공의료기관의 공익목적 사업에 대한 손실 보전 및 공공의료사업을 상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한다.
- 4-5/ 행안부 정부합동평가에 책임의료기관 평가의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한 지침 및 규정을 신설 또는 강화한다.
- 4-6/ 체계적인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과 국가의료정책 추진을 위해 지자체별 공공의료발전심의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노사 대표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5. 지방의료원 운영 개선

- 5-1/ 지방의료원의 운영평가지표를 공공적 역할 수행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평가지표로 개선한다.
- 5-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상 경영평가 대상에서 지방의료원을 제외하고 책임의료기관 평가로 일원화한다.
- 5-3/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계획 수립시 보건의료산업 공공병원 노사 참여 보장한다.
- 5-4/ 지방의료원의 민주적 운영과 노동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의료원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노동조합의 추천권을 제도화한다.

3. 상기 1항에 따른 법제도 개선을 위한 대국회 입법활동의 내용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대국회 입법과제>

1. 책임의료기관 육성과 공공의료 역할 강화를 위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 1-1/ (책임의료기관 신규 개념 추가 등) ① 공공보건의료사업,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고, “책임의료기관”의 개념 추가. 기존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정의에 “양질의 적정진료를 위한 질향상 사업”을 추가하여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진료서비스를 향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②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역책임의료기관을 포함시키고, 공공보

건의료 전달체계의 범위에도 책임의료기관과 보건소를 포함하도록 규정

1-2/ (권역·지역책임의료기관의 법적 근거 마련 등) ①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공공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이상급의 의료기관중에서 지정토록 하며, 주요 기능은 필수중증 의료의 전문진료 제공, 권역 필수의료에 대한 기획·연구, 의료인력 파견 및 교육, 권역내 공공보건 의료 전달체계의 총괄조정 기능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규정

②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지방의료원을 우선하여 지정하도록 하며, 필수의료 제공, 지역의 필수의료에 대한 기획·조정, 공공보건의료기관간 진료·사업 연계, 지역별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역할을 규정

③ “지역책임의료기관”에 부득이한 경우 한시적으로 공공의료기관 외 민간의료기관이 참여할 경우 공공성 담보를 위해서 병원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보건소장을 포함시켜야 하며, 포괄수가제도, 운영평가, 공시 등을 수행해야 하도록 규제방안을 마련

④ 필수의료는 권역 및 지역에서 원활하게 제공되기 위해서는 권역·지역책임의료기관간 연계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각 기관 내 공공보건의료본부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계의 중심점 역할을 수행

1-3/ (필수의료 인력 양성) 공공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공공의료 기본계획에 관련 내용을 수립하게 하며, 필수의료 인력 양성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교육훈련센터의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 추가

1-4/ (공공보건의료기관 역량 제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전방위 분야에서 심도있는 기술지원이 필요함. 이에 인력 지원, 기관간 연계, 사업간 연계, 평가, 질 향상 지원 등을 위해서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1-5/ (지방정부 역할 및 책임 확대) 지방정부의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역할 및 책임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조직 강화를 위하여 위탁기관의 범위를 확대

1-6/ (중앙정부 내 수평적 거버넌스 구축) 현행 공공의료기관 범부처협의체를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협의조직인 “중앙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설치로 제도화하고 “중앙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보건의료의 주요 논제에 대한 협의와 조정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 마련

2.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방정부 책임 강화를 위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2-1/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 강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

조(보조금 등)을 개정을 통해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지자체별 조례 및 지자체 공공의료발전 종합계획에 <공익적 의료행위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반드시 포함할 수 있도록 의무화 하는 조항 신설

3.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에 대한 규정 강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3-1/ (공익참여의료법인 규정 신설) 의료법에서는 민간의료기관중에서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관은 공익참여의료법인이어야 함을 법안으로 신설하여 규제를 강화

3-2/ (공익참여의료법인 기능 정립 신설) 공익참여의료법인은 응급, 심뇌, 산모 등 진료서비스, 어린이, 장애인, 재활에 대한 진료서비스 등을 수행하도록 기능을 정립하도록 규정 마련

4. 보건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기능정립 및 역할확대를 위한 「지역보건법」 개정

4-1/ (보건소 등 기능 및 역할정립 개정) 지역보건법에서는 보건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의 기능 및 역할을 구분하여 기관간 효율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개정

4-2/ (보건소 등 기능 조정) 보건소는 지역보건의료의 기획 및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다양한 지역보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조정

5.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재원확보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 증진법」 개정

5-1/ (공공의료 강화 예산확보의 법적 근거 마련) 공공보건의료 기능 확대 및 강화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재원 마련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에 공공보건의료 관련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6. 공공 영역에서의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6-1/ (응급의료기본 계획 수립 시 공공보건의료계획 연계) 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응급의료기본 계획 수립 시 공공보건의료계획 및 공공보건의료계획과 연동 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 ② 응급의료기금 사용 용도에 필수의료에 대한 사업 수행 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7. 공공 영역에서의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7-1/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 수립 시 공공보건의료계획 연계)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세부집행계획 수립시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및 공공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고, 기존 심뇌혈관센터 지정을 권역 및 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

8. 공공 영역에서의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

8-1/ (중앙모자센터 기능개편 등) 모자보건법에서는 고위험 임신부 및 미숙아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중앙모자센터의 기능 개편, 권역 모자센터, 지역 모자센터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

9. 공공 영역에서의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9-1/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법적 근거 마련 등)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공공어린이 재활센터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10. 공공 영역에서의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10-1/ (감염병 관리기관 체계화) ① 국가중앙감염병 전문병원의 설립 및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의 설치를 명시 ②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여 권역과 지역 감염병 관리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

11.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11-1/ (필수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필수의료 인력확보를 위하여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분원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12. 공공보건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공중보건의료장학을 위한 특례법」 개정

12-1 (공중보건의료장학제도 확대) 기존의 무의촌 해소를 위해 재정하였던 공중보건의료장학을 위한 특례법을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의사 및 간호인력 등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례법을 개정하여 공중보건의료장학제도 확대를 도모

③ 임금인상 요구

1. 표준생계비 확보와 생활임금보장,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지방의료원 중앙협약서 제 36조 제1항 <별표1>을 아래 <별표1>로 변경한다.
2. 지급률 및 임금인상 적용시기는 시도별 교섭 또는 지부별 현장 교섭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단, 군산의료원은 공무원임금인상률을 적용하되, 세부사항은 노사합의에 따른다.

4 단체협약 요구

1. (직급보조비) ① <별표 3>과 같이 직급보조비를 인상한다. 단 군산의료원은 2020년도 지방의료원 특성교섭 합의를 준용한다.
② (적용시기) 직급보조비 인상의 적용시기는 2021년 1월 1일로 한다.

2. (정액급식비) ① 정액급식비는 월 14만원으로 1만원 인상한다. 단 군산의료원은 2020년도 지방의료원 특성교섭 합의를 준용한다.
② (적용시기) 정액급식비 인상의 적용시기는 2021년 1월 1일로 한다.

3. (노동이사제)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제도화하여, 경영의 투명성, 책임성, 공익성 및 민주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노동자와 사용자의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기 위한 노동자이사제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하여 노동이사의 권한과 책임, 경영권 참여 확대 등에 대하여 논의한다.

<별표 1>

지방의료원 2020년 기본급표

구분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약사
1	3,314,900	2,841,100	2,538,900	2,094,500	1,879,600	1,675,800	1,642,800	1,879,500
2	3,437,600	2,957,200	2,641,600	2,191,900	1,965,300	1,757,200	1,665,400	2,001,600
3	3,563,900	3,075,100	2,748,100	2,292,500	2,056,100	1,843,100	1,703,100	2,131,900
4	3,691,100	3,195,700	2,858,800	2,395,200	2,151,500	1,930,700	1,755,800	2,270,600
5	3,820,400	3,318,100	2,972,300	2,501,000	2,250,300	2,021,800	1,823,600	2,406,800
6	3,951,000	3,441,500	3,088,200	2,609,700	2,351,500	2,115,100	1,908,800	2,551,400
7	4,083,000	3,566,200	3,205,900	2,718,700	2,453,400	2,208,800	1,993,500	2,704,500
8	4,215,500	3,691,400	3,325,100	2,828,000	2,555,900	2,298,700	2,075,300	2,853,200
9	4,349,100	3,817,100	3,444,600	2,937,700	2,653,400	2,384,600	2,153,500	3,010,300
10	4,482,600	3,942,500	3,565,000	3,040,500	2,746,500	2,465,700	2,228,800	3,175,800
11	4,616,200	4,069,200	3,677,400	3,138,100	2,834,300	2,544,400	2,300,600	3,334,800
12	4,754,800	4,188,300	3,785,900	3,234,200	2,920,600	2,621,300	2,372,000	3,501,600
13	4,883,600	4,299,800	3,888,900	3,324,600	3,002,500	2,695,100	2,440,400	3,659,300
14	5,003,200	4,403,800	3,984,900	3,410,000	3,080,800	2,765,600	2,506,900	3,824,000
15	5,113,300	4,501,700	4,075,600	3,492,000	3,155,500	2,833,400	2,570,300	3,976,800
16	5,216,100	4,594,000	4,160,900	3,568,800	3,226,300	2,898,800	2,631,800	4,135,900
17	5,311,600	4,679,900	4,241,200	3,642,100	3,294,200	2,959,900	2,691,800	4,281,000
18	5,400,300	4,759,900	4,317,000	3,711,400	3,359,200	3,019,200	2,747,600	4,431,000
19	5,482,400	4,834,800	4,388,400	3,777,200	3,420,300	3,076,000	2,802,600	4,564,000
20	5,559,300	4,904,700	4,455,300	3,839,100	3,478,600	3,130,300	2,855,100	4,700,800
21	5,630,400	4,970,100	4,518,300	3,898,600	3,534,200	3,182,100	2,904,600	4,812,700
22	5,696,400	5,031,400	4,577,400	3,954,600	3,586,700	3,231,800	2,952,000	4,939,000
23	5,757,200	5,088,900	4,633,300	4,007,200	3,637,400	3,279,100	2,997,200	5,062,600
24	5,814,000	5,143,100	4,685,400	4,057,200	3,685,600	3,324,800	3,040,600	5,189,100
25	5,860,700	5,192,700	4,734,800	4,104,900	3,731,200	3,368,100	3,082,100	5,310,600
26	5,905,200	5,234,700	4,781,300	4,149,800	3,775,000	3,410,200	3,119,600	
27	5,946,500	5,273,500	4,819,800	4,192,500	3,812,000	3,445,200	3,151,800	
28		5,310,500	4,856,800	4,228,300	3,846,400	3,478,900	3,182,900	
29			4,890,800	4,261,900	3,879,800	3,510,800	3,212,800	
30			4,923,900	4,295,000	3,911,600	3,541,700	3,241,900	
31				4,325,700	3,941,500	3,571,700	3,270,500	
32				4,354,700				

<별표 3>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

구분	월지급액(원)	변경
2급	500,000원	500,000원
3급	400,000원	400,000원
4급	250,000원	250,000원
5급, 약사	155,000원	165,000원
6급	140,000원	155,000원
7급, 8급	125,000원	145,000원

2020. 12. 18.

[사용자 교섭 대표]

[노동조합 교섭 대표]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조 승 연



나 순 자

